

성과관리 규정

제정 : 2023. 08. 04.

담당 : 성과관리실(02-950-5550)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대상)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제5조(성과관리 절차)	제6조(성과관리 내용)	제7조(주관부서)	제8조(목표수립)
제9조(모니터링)	제10조(성과평가)	제11조(환류)	제12조(평가결과 활용)
제13조(기타 사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에 따른 학과 및 부서의 운영 성과를 평가 및 환류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 경영 개선에 필요한 전반적인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 학과 및 행정부서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전계획'이라 함은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건학 이념을 실현하고 대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 목표, 추진 전략, 추진 체계, 세부 실행 계획, 예산 등을 말한다.
2. '성과지표'라 함은 목표 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행의 성과를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형태로 정의한 것을 말한다.
3. '성과관리'라 함은 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얻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평가환류'라 함은 사업 수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를 근거로 개선·보완·발전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① 대학발전위원회는 발전계획 목표 수립에 대해 심의하며, 전략기획실이

지원한다.

- ② 자체평가기획자문위원회는 평가를 계획하고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감사실이 지원한다.
- ③ 성과관리위원회는 교육성과 및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며, 성과관리실이 지원한다.
- ④ 각 위원회 역할 및 세부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성과관리

제5조(성과관리 절차) 성과관리는 발전계획에 따른 ‘목표 수립-모니터링-성과 평가-환류’의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성과관리 내용) 성과관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심역량, 전공능력, 교육만족도 등 교육성과
2. 대학정보공시 지표
3. 교육, 연구 등 분야별 성과지표
4. 기타 대학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필요한 성과

제7조(주관부서) 주관부서는 성과관리실이며,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2. 발전계획 성과관리
2. 교육성과관리
3. 대학정보공시지표 및 부서 성과지표관리
4. 성과 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데이터 총괄 관리
7. 기타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목표수립) 매년 학과 및 부서는 발전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따라 당해 예산, 성과 목표,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단, 예산 및 성과 목표는 전년도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기획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부서 사업 중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부서 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모니터링) 성과관리실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한다.

제10조(성과평가) ① 교육성과는 핵심역량, 전공능력, 교육만족도 등으로 평가한다.

- ② 자체평가는 대학발전위원회에서 대학 전반에 대한 평가를 기획하고 자체평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 수립한 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③ 정부재정지원사업 자체평가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④ 성과평가를 위한 조사 운영 계획은 성과관리실에서 수립하고 시행부서에 이를 통보하며, 시행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부 계획 수립, 조사 시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과관리실에 제출한다.
 1. 교육성과에 관한 조사
 2. 기타 성과 관리에 관한 조사
- ⑤ 성과관리실은 시행부서의 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위원회에서는 개선 과제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환류) 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모니터링 및 환류는 성과관리실이 담당한다.

② 교육성과 평가 결과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각 부서 및 학과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한다.

③ 자체평가 결과는 자체평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대학발전위원회에서 개선안을 심의하여 발전계획을 수정하거나 차년도 목표 설정에 반영한다.

제12조(평가결과 활용) ① 평가 결과 및 성과는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대학 운영 및 발전에 활용한다.

② 총장은 성과에 따라 부서나 학과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사항) 기타 사항은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